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6.10.)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설

나. 개정법에 따른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2조의2)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2조의3)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2조의4)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2조의5)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2조의6)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보수 등(제2조의7)

사.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등 준용방식(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근무시간 면제자의 구분 등 근무시간 면제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교섭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항을 임용권자의 동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고, 임용권자는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2제2항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와 법 제5조의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에 대해 동의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에서 제4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조합원의 수 등 자료제출) ① 제2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의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임용권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본다.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 ① 제2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의받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자 지정에 있어 임용권자와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의5(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절차 등)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사용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매월 10일 까지 전월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

2.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한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

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3.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근무시간이 전부 면제된 자와 부분 면제된 자를 구분한다)

4.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 공개한다.

③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시간 면제 인원에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정보를 매년 3월 31일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7(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규정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1항 후단 중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를 “같은 영 제11

조의3 중 조문 제목에 “위원회”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로, 본문에 “위원회”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11조의4 본문 중 “단체”는 “단체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제1호의 “해당 단체의 전직·현직 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제11조의2”로 한다.

가. 노동단체의 전직·현직 임원

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로,

같은 영 제11조의5제1항 중 “2년”은 “3년”으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근무시간 면제자의 구분 등 근무시간 면제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u> <u>② 제1항의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교섭절차에 따른다.</u> <u>③ 제1항의 사항을 임용권자의 동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고, 임용권자는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2제2항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와 법 제5조의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 등을 고</u>

<신 설>

려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에 대해 동의할 수 있
다.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
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
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에서 제4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
용인원의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조합원의 수 등 자료제

출) ① 제2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의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
해 임용권자와 성실히 협의하
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
인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른 공
고일”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
섭노동조합의 공고일 또는 제2

<신 설>

조의2제3항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본다.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 ① 제2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의받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자 지정에 있어 임용권자와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신 설>

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의5(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절차 등)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용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사용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면제시간 사용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

2.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한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3.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근무시간이 전부 면제된 자와 부분 면제된 자를 구분한다)

4.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 공개한다.

③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시간 면제 인원에게 제1

<신 설>

제8조(구제신청 접수에의 통보) 노
동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

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정보
를 매년 3월 31일까지 임용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7(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
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
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
법」에 따른 복무규정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8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

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
 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
 ·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
 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
 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
 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
 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
 ·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에게도”로, 같은 영 제29조제1

----- 같은 영 제11조의3 중

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조문 제목에 “위원회”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로, 본문에 “위원회”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11조의4 본문 중 “단체”는 “단체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제1호의 “해당 단체의 전직·현직 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노동단체의 전직·현직 임원

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로, 같은 영 제11조의5제1항 중 “2년”은 “3년”으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

② -----

조제1항제4호, <u>제11조의2부터</u>	----- <u>제11조의2</u> -----
<u>제11조의6까지</u> , 제14조, 제14조	-----
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	-----
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	-----
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	-----
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	-----
· 제12호 · 제13호 · 제14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
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	-----
한다) · 제17호 · 제18호는 적용	-----
하지 않는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 락 처	(044) 202 - 7509